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(안 제15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마약류검사의 근거를 담은 개정 「경찰공무원법」*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* 법률 제21,390호, 2027.2.28. 시행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, 시기, 주기, 방법, 절차 등을 정함

- 검사 대상을 마약 관련 업무 담당, 마약류 검사 담당, 기관장 등 지휘권자,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·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함
- 마약류검사는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인권침해 요소가 적은 타액검사의 방법으로 함
- 경찰공무원이 측정 결과에 불복 시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-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마약류검사의 대상, 방법 등 「경찰공무원법」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검사의 예측가능성 확보
- 경찰청 내부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의 비위를 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